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

• 정책 안내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

• 정책 안내서 •

CONTENTS

1 공정거래협약 제도 04
Ⅰ. 공정거래협약이란? 06
Ⅱ.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설계 09
Ⅲ. 공정거래협약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10
Ⅳ. 공정거래협약의 거래분야 19

2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4
Ⅰ. 협약이행평가 개요 및 현황 26
Ⅱ. 협약이행평가 절차 29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32

3 부록 40
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리스트 42
Ⅱ. 분야별 평가점수 일람표 4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 정책 안내서

Ⅰ. 공정거래협약이란?

Ⅱ.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설계

Ⅲ. 공정거래협약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Ⅳ. 공정거래협약의 거래분야

1

공정거래협약 제도

Ⅰ 공정거래협약이란?

공정거래협약이란, 대·중견기업과 그 거래 상대방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협약'의 구조

대·중견기업
- 하도급 : 원사업자/대·중견기업
- 유 통 : 대규모 유통업자
- 가 맹 : 가맹본부
- 대리점 : 공급업자

협약(協約)

거래 상대방
- 하도급 : 수급사업자/중소기업
- 유 통 : 중소 납품업자/매장임차인
- 가 맹 : 가맹점사업자
- 대리점 : 대리점

법규 자율준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협력 및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 경쟁력 제고

Ⅰ 공정거래협약이란?

협약의 성격

협약은 대·중견기업과 그 거래상대방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서로 협력 및 협의하여 정한 '약속'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협약 당사자는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약의 내용

협약은 대·중견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내용을 마련하여 이의 이행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당사자

협약의 당사자는 분야별로 협약 제도 운영 주체(주로 대·중견기업), 협약 체결 파트너(협약제도 운영 주체의 거래 상대방으로 주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야	협약 제도 운영 주체 (대·중견기업)	협약 체결 파트너(거래 상대방)
하도급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非하도급거래) 대·중견기업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非하도급거래) 중소기업
유통	대규모 유통업자	중소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가맹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공급업자	대리점

I 공정거래협약이란?

관련 규정

분야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협약은 하도급, 대규모유통, 가맹, 대리점까지 총 4가지 거래분야에 도입되었으며, 해당 분야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분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조

대규모유통 분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조

가맹 분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조

대리점 분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Ⅱ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설계

공정거래협약제도는 '삼각공조 프로그램'(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중견기업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주축이 되며,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거래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정부)는 협약절차 및 협약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습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협약은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정부 간의 삼각공조 프로그램(TC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최종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개별부처 차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등 여러 거래 영역에서 대·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함에 있어 엄격한 법집행만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거래당사자간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조정제도·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범정부차원

급속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및 불공정 거래관행 심화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국민경제의 지속 발전·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적 결과물이 도출되며 협약제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상생협력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

동반성장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호혜적 거래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경제행위

기업 경쟁력 제고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공정한 사회 구현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주요 연혁

1984년 12월
하도급법 제정

2006년 3월
상생협력법 제정 제정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7년 9월
(하도급분야) 협약 예규 제정

2009년 4월
(유통분야) 협약 예규 제정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012년 5월
동반성장지수 결과 최초 발표

2013년 12월
(가맹분야) 협약 예규 제정

2019년 7월
(대리점분야) 협약 예규 제정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동반성장지수 소개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견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매년 대·중견기업 중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지수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지수 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5:5로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동반성장 종합평가
대상	대·중견기업	1·2차 중소기업, 대·중견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중견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중견기업별 실적평가(정량)
평가시기	매년 1회	매년 1회
주요 평가 항목 (하도급 기준)	1. 계약의 공정성(46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34점)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협력사 체감도 조사 : 80점 1. 거래관계(30점) • 공정거래(구두발주, 거래제한, 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 적정성(납품단가 결정, 결제기간 등) 2. 협력관계(45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복지, 인력 개발 분야에 대한 대·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 3. 동반성장 체제(25점) • 대·중견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 체계, 환경조성 등
	+ 가점 CP협약결과, CCM인증, 재협약, 비협약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경영직·간접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 등	**+ 대·중견기업 실적평가 : 20점** 공평한 성과의 배분, 인력개발 및 교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영, 임금격차 해소 등
	-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등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1 공정거래 협약과 ESG 경영

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 주요 '재무' 지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량, 인적자본 수준과 같은 '비재무'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상한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합니다.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준법 경영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잘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형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어 결국 장기적으로 재무적 성과 역시 우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G의 여러 영역 중 "S(Social, 사회)"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정거래협약 역시 공급망, 거래처,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에 대한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ESG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K-ESG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국민연금의 ESG 관련 평가지표 등에서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ESG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2 공정거래 협약과 ESG 경영

국내 ESG 경영 평가 가이드라인 및 지표

1.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항목		분류번호	세부 내용
사회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S-6-2	협력사 ESG 지원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2.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항목		지표	세부 내용
사회	공정경쟁	공정경쟁·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 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3. 국민연금 ESG 평가 지표

항목		지표	세부 내용
사회	공정경쟁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업체 관리 수준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 활동
			하도급법 위반 사례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정보보호 시스템
			기부금

따라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을 도입·운영함으로써 ESG 경영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진행하는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도입·운영하면서 협약이행평가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들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ESG 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1 국내 기업 ESG 경영 보고서 사례

1 A기업 ESG 경영 보고서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 **함께 나아가는 공급망**

A기업은 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A기업 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협력회사를 고려하여 공급망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협력회사 관리를 통한 전체적인 공급망 관리를 기본으로, 협력회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공정거래 협약 체결**

A기업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4대 실천사항 운영,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 금융지원을 통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지원 강화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생협력과 협력사 지원**

A기업은 품질 경쟁력과 소비자의 니즈 충족을 위해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동반성장 체계를 운영 및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2 국내 기업 ESG 경영 보고서 사례

2 B기업 ESG 경영 보고서

상생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 추구

- **상생경영**

B기업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고, 함께 만드는 미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

B기업은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평가 실시하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협력회사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 보존 및 발급,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 등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협력회사 동반성장**

협력회사에게 자발적으로 상생경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협력회사에게 여러 포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경영현황, 품질 등 경영활동 전반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신기술 개발 지원, 인력 및 경영 관리 지원 등을 2차 협력회사까지 확대하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Ⅲ 협약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배경

3 공정거래 협약과 ESG 경영

이러한 기업의 대외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제도는 공급망, 거래처,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의 만족,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 기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역할까지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의 도입·운영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이자 가장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가장 손쉽게 실천 가능한 ESG 경영의 일환입니다.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 한국거래소, ESG포털 /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 국민연금관리공단, ESG 평가 지표
-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Ⅳ 공정거래협약의 거래분야

현재 공정거래협약은 하도급, 대규모유통, 가맹, 대리점 총 4가지 거래분야에 도입되었습니다. 각 거래분야는 하도급법 등 개별 법규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협약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하도급, 대규모유통, 가맹, 대리점 거래분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4. 5. 28., 2015. 7. 24.〉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Ⅳ 공정거래협약의 거래분야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비(非)하도급거래란? – 하도급 협약 예규 제1조 및 제3조

- 비하도급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간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 협약제도는 '규제'가 아닌 '자율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하도급법 상의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Ⅳ 공정거래협약의 거래분야

유통 분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란?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 · 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Ⅳ 공정거래협약의 거래분야

가맹 분야

가맹사업거래란? – 가맹거래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0. 12. 29., 2021. 5. 18.〉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Ⅳ 공정거래협약의 거래분야

대리점 분야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란? – 대리점거래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 정책 안내서

Ⅰ. 협약이행평가 개요 및 현황

Ⅱ. 협약이행평가 절차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2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I 협약이행평가 개요 및 현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하도급 협약 예규가 개정되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해오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협약 예규 제12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제도 기획,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 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
-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 평가점수 산정
- 기업 대상 자문, 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 기타 협약 관련 제반 업무

위 하도급 분야 협약 예규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대규모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 협약 예규 역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행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평가 신청, 이행 실적자료 제출, 현장 점검을 받게 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기업의 실적자료 검토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점수를 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Ⅰ 협약이행평가 개요 및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공정거래협약을 평가받은 기업들은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 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등급외	85점 미만	

추가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중견기업이 거래상대방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점 감경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의 경감점수		
최우수	95점 이상	3점
우수	90점 이상	2점
양호	85점 이상	1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

1. “벌점”이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Ⅰ 협약이행평가 개요 및 현황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동반성장지수 신규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대리점 분야에도 새롭게 협약제도가 도입되는 등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사 평가 시 협약제도 도입 여부를 반영하는 등과 같은 환경적인 원인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직접 반영하듯 최근 동반성장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어 협약제도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 분야별 협약이행평가 참여기업(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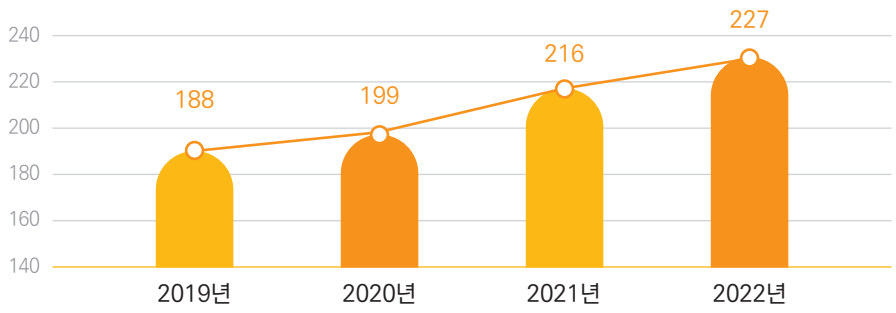

평가신청연도 기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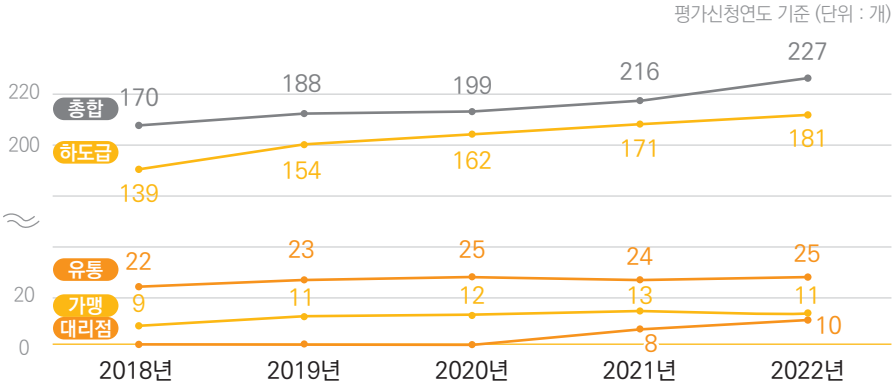

▶ 공정거래협약은 동반성장지수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반성장지수 외 기업에서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분야 동반성장비(非)지수 중견기업 협약이행평가 참여 추이(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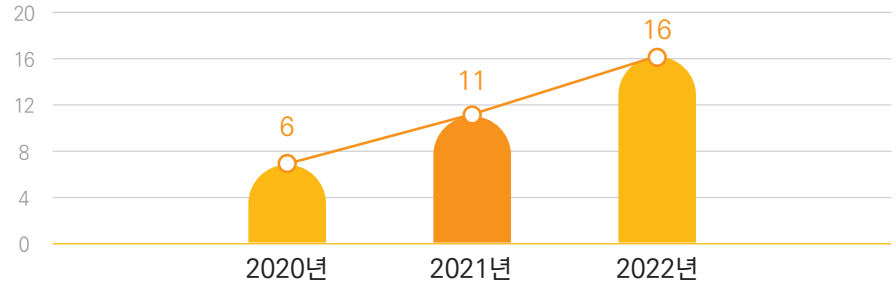

Ⅱ 협약이행평가 절차

협약이행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 절차

▶ 첫 번째, 협약서 등 사전 준비과정

협약제도를 운영 예정인 대·중견기업은 협약 체결 전 공정거래협약서(안), 협약체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2가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문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피드백 후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두 번째, 협약 체결 및 협약 제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서 확인 뒤 대·중견기업은 협약 체결을 위한 거래상대방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협약체결 후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협약제도를 1년 간 운영합니다.

▶ 세 번째, 협약이행평가 요청

대·중견기업은 1년 간 운영한 협약제도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약이행평가 요청을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출 자료를 서면, 현장확인평가 등을 통해 협약이행평가 등급을 확정짓게 됩니다.

Ⅱ 협약이행평가 절차 1월~9월초

▶ 동반성장 지수기업 일정

01

평가 접수 및 신청

2월 말

- 설명회
- 평가신청
- 실적자료 제출

02

본 평가

3월~6월

- 서면평가, 현장확인평가, 추가자료 제출
  (각 기업별 현장확인 완료일부터 10일)
- 효율성 증대 항목 평가(상대평가 항목)
- 법위반 사실 등 조회/반영
- 이행평가 중간결과 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03

이의신청

7월

- 잠정 평가등급 통보
- 이의신청(약 7일 정도 진행)

04

최종평가 등급 확정 및 통보

8월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해 최종평가등급 확정
- 최종평가등급 통보 및 인센티브 부여

※ 일정 등은 당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포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Ⅱ 협약이행평가 절차 9월말~12월초

▶ 동반성장 지수기업 일정

01
평가 접수 및 신청
9월 말~10월 초

- 설명회(9월 말 예정)
- 평가신청
- 실적자료 제출

02
본 평가
10월 중순~11월 초

- 서면평가, 현장확인평가, 이행평가 중간결과 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 만족도 설문조사

03
이의신청
11월 중순

- 잠정 평가등급 통보 후 약 5일 정도 진행

04
최종평가 등급 확정 및 통보
11월 말~12월 초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해 최종평가등급 확정
- 최종평가등급 통보

※ 일정 등은 당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포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하도급(제조업 기준)

협약이행평가는 거래분야 및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항목·기준이 달라지나 전체적인 평가항목·기준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하도급분야 제조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크게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배점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이행평가 평가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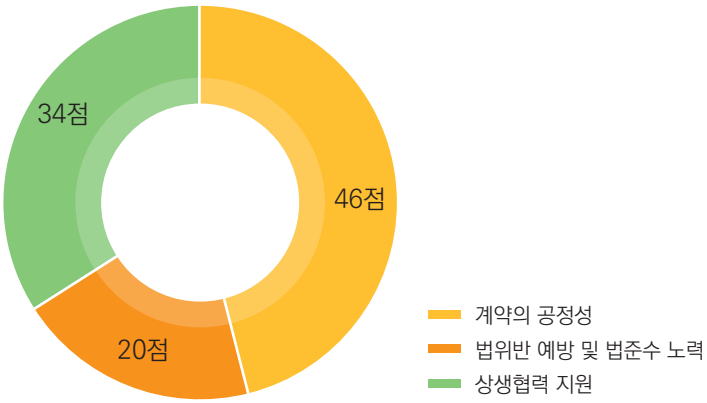

위 3가지 영역별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계약의 공정성

1.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2.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및 공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명시여부
-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통신업)
- 선수금 비율,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인터넷플랫폼업)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하도급(제조업 기준)

3.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 대금지급조건의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 여부
- 패널티 부과의 형평성
-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첫 번째 계약의 공정성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보급한 4대 실천사항 중 협력업체의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표준계약서에 대한 준수와 이행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형·누락된 조건 없이 사규 등으로 반영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평가항목입니다.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하도급 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두 번째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에서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사전적으로 대·중견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규나 조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예방 시스템의 유무와 함께 사후적으로도 사후검증절차, 법위반 임직원 불이익 제공 등을 통해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대·중견기업이 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안전망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평가항목입니다.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하도급(제조업 기준)

3 상생협력 지원

1.금융지원
2. 기술지원 및 보호실적
3. 인력채용 지원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5. 효율성 증대 정도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실적
7. SW개발자의 유지보수 과업 수행(정보서비스·인터넷플랫폼업)
8. 위생지원, 원물생산자 직접지원(식품업)
9. 교육지원(광고·인터넷플랫폼업)
10.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급 직불(광고업)
11. 기타가점항목

세 번째 상생협력 지원에서는 규정이나 법을 준수하고 실제 이행하고 있는 부분 외에 여러 지원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적시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대·중견기업과 거래상대방의 상생구조를 확인하는 평가항목입니다.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
   -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3.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4. 협약평가결과 확정 보류
5. 벌점 누적 사업자 평가대상 제외

추가적으로 네 번째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등으로 확인된 법위반 사안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으로 인해 조치 등을 취하게 될 경우 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는 협약이행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점수에서 차등적으로 감점이 되는 평가항목입니다.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유통

하도급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분야인 유통, 대리점, 가맹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공정성

1. 기준 설정 및 운용
   - 납품업자 등의 선정 및 입점·거래종료 결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설정 및 운용
   -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결정·변경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및 운용
   -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및 운용
   - 매장 인테리어 비용/광고·홍보물 등 제작비용/방송제작비용 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및 운용
2.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3.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관련
4. 판매수수료 수취 등의 개선
   - 판매수수료율
   - 직매입거래 비중의 증가 비율
   - 거래조건 유지율
   - 임대료 조정, 납부 유예 및 관리비 면제 등 지원 실적
   - 중소기업 제품판매 방송 실적의 증가 비율
5.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규정 등의 설정 및 운용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설정 및 공개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준수
   - 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대한 충실한 반영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사전 서면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 구두발주 등 방지 시스템 구축
   - 경영정보 요구 관련 기준 마련 및 준수
   - 자체 점검 실시 실적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여부
   - 종업원 파견 가이드라인 준수
   -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준수
   - 반품지침 준수
   - TV홈쇼핑 심사지침 준수
   -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준수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유통

3 상생협력 지원

1. 금융지원
   - 전년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 간접지원 제도 도입
2. 기타 지원
   -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가격·판매수수료 조정실적
   - 중소기업 상품판매 실적 증가비율
   - 총 매출액 증가 비율
   - 총 거래금액 증가 비율
   -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분담
   - 기타지원 실적
3. 추가 가점항목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조치
   - 대규모유통업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가맹

1 계약의 공정성

1. 영업지역 설정·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기준 설정
2. 광고·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6. 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2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1. 영업지역 설정, 상권·정보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이행
2. 광고·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준수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운영
6. 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기준 준수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이행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이행

3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2.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3. 이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4.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5. 기타 가점항목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가맹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조치
   -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Ⅲ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대리점

1 계약의 공정성

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2.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등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3.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4.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주요 서면 교부체계 구축
   - 주문내역 확인체계 구축
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및 이행
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3 상생협력 지원

1. 금융지원
2. 대리점의 매출확대지원
3. 기타지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조치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리스트

Ⅱ. 분야별 평가점수 일람표

3

부 록

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리스트

1. 제조업(125)

전기·전자(39)

삼성전자	대덕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희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파트론
삼성SDI	휴맥스
LG전자	SK실트론
LG디스플레이	가온전선
LG이노텍	세방전지
LS전선	일진전기
SK하이닉스	DB하이텍
LS일렉트릭	심텍
코웨이	에스에프에이
한솔테크닉스	코리아써키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쿠쿠전자
오텍캐리어	인터플렉스
영풍전자	신성이엔지
원익IPS	타이코에이엠피
한화시스템	모베이스전자
LIG넥스원	현대일렉트릭(신규)
SK매직(신규)	

기계·자동차·조선(49)

기아	한국GM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HSD엔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항공우주)	경신
만도	성우하이텍
현대트랜시스	SNT모티브
현대엘리베이터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LS엠트론	한온시스템
르노삼성자동차	유라코퍼레이션
다스	서연이화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대원강업	한국프랜지공업
화승알앤에이	화신
에코플라스틱	피에이치에이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세메스
덴소코리아	HL클레무브
두산산업차량	DN솔루션즈
에스엘	일진글로벌
TK엘리베이터코리아	평화발레오
현대건설기계	현대케피코(신규)
OTIS엘리베이터(신규, 시범)	

화학·비금속·금속(43)

코닝정밀소재	LG화학
포스코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LX하우시스
현대제철	LG생활건강
KCC	유한킴벌리
이랜드월드	LF
아모레퍼시픽	태광산업
한국쓰리엠	OCI
삼성물산(패션부문)	도레이첨단소재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샘
한화솔루션	롯데알미늄
포스코케미칼	신세계인터내셔날
고려아연	동국제강
풍산	세아베스틸
한화	신원
동우화인켐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엘앤씨
TKG태광	한국콜마
애경산업	깨끗한나라
KG스틸	코스맥스(신규, 시범)
KCC글라스(신규)	

2. 건설(33)

DL이앤씨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KCC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현대건설	부영주택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한양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DL건설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한신공영	HL디앤아이한라
자이씨앤에이	반도건설
중흥토건	대방건설
제일건설	서희건설(신규, 시범)
우미건설(신규, 시범)	

3. 식품업(20)	
롯데제과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오뚜기	동원F&B
하이트진로	남양유업
매일유업	SPC삼립
hy	빙그레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삼양사	오비맥주
풀무원식품	하림
동서식품	사조대림(신규, 시범)
4. 홈쇼핑업(5)	
롯데홈쇼핑	GS홈쇼핑(GS SHOP)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5. 도소매(9)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아성다이소	서원유통
홈플러스	농협유통
쿠팡	
6. 가맹점업(14)	
코리아세븐	BGF리테일
GS리테일(GS25)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GRS
한국인삼공사	CJ올리브영
이니스프리	이마트24
BR코리아(신규, 시범)	교촌F&B(신규, 시범)
제너시스BBQ(신규, 시범)	BHC(신규, 시범)

7. 백화점·면세점(7)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신세계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8. 통신업(3)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9. 정보서비스업(7)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LG CNS	포스코ICT
SK주식회사	롯데정보통신
티시스	
10. 플랫폼사업자(2)	
네이버	카카오
11. 광고업(3)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신규)	

23년도(24년도 공표) 평가대상 234개사 중 공표대상 225개사, 시범평가 9개사)

평가유예 기업(7): 대우조선해양, 대한전선, 쌍용건설, 쌍용자동차, 케이조선, HJ중공업, STX중공업

Ⅱ 분야별 평가점수 일람표

1 하도급분야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업종	제조	건설	정보	통신	식품	광고	인터넷	중견
1. 계약의 공정성	45	52.5	50	50	48	58	58	80
(1)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5**	**7.5**	**5**	**5**	**5**	**5**	**5**	**7**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3	3.5	3	3	3	3	3	5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2	4	2	2	2	2	2	2
(2)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15**	**19**	**20**	**20**	**18**	**28**	**28**	**2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5	7	6	6	6	6	6	8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6	8	8	8	8	8	8	8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2	2	2	2	2	2	2	2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2	2	2	2	2	2	2	2
비밀유지계약 체결	–	–	2	2	–	–	–	–
선수금 비율,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	–	–	–	10	10	–
(3)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25**	**26**	**25**	**25**	**25**	**25**	**25**	**53**
대금지급조건의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여부	22	20	22	22	22	22	22	50
페널티 부과의 형평성	1	3	1	1	1	1	1	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2	3	2	2	2	2	2	2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	18.5	20	20	20	20	20	20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4**	**12.5**	**14**	**14**	**14**	**14**	**14**	**17**
'하도급 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3	2.5	3	3	3	3	3	5
'바람직한 서면발급,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3	2.5	3	3	3	4	3	5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3	2.5	3	3	3	3	3	5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3	3	3	3	3	2	3	–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2	2	2	2	2	2
(2)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6**	**6**	**6**	**6**	**6**	**6**	**3**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4	4	4	4	4	4	4	1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2	2	2	2	2	2

업종	제조	건설	정보	통신	식품	광고	인터넷	중견
3. 상생협력 지원	35	29	30	30	32	22	22	+36
(1) 금융(자금)지원	9	9	9	9	8	9	9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5	4	3	6	2	–		
(3) 인력채용 지원	1	1	1	1	1	–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10	3	3	3	–	–		
(5) 효율성 증대 정도	6	8	9	9	8	8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실적	4	4	2	2	4	–		
(7)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	–	3	–	–	–		
(8) 위생지원,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	–	–	–	9	–		
(9) 교육지원	–	–	–	–	–	2		
(10)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	–	–	–	–	3		
(11) 기타 가점항목	+23	+17	+14	+19	+21	+15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	△3(경고) ~ △25(고발)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2(경고) ~ △5(고발)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경고) ~ △5(고발)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7 ~ △15							
(3)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5 ~ △10							
(4) 협약평가결과 확정 보류	공정거래위원회 안건 상정 기업은 결과 확정 보류							
(5) 벌점 누적 사업자 평가대상 제외	공공입찰 참가제한 기업은 1년간 평가 제외							

Ⅱ 분야별 평가점수 일람표

2 유통분야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업종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편의점	마트, 전문점	온라인 플랫폼
1. 계약의 공정성	60	60	60	60	60
(1)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 운용	6	6	6	6	6
(2) 판매수수료 결정 · 변경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 운용	6	6	–	–	6
(3) 판매장려금 결정 · 변경 등의 공정한기준 설정 · 운용	–	–	6	6	–
(4) 판매촉진행사(할인행사 · 광고 등) 진행 및 비용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 운용	6	6	6	6	6
(5)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 운용	6	–	–	6	–
(6) 광고 · 홍보물 등 제작비용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 운용	–	–	6	–	–
(7) 방송제작비용 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 운용	–	6	–	–	–
(8) 광고 수수료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 · 운용	–	–	–	–	6
(9)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14	14	14	14	14
(10)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관련	8	8	8	8	8
협약체결 전 대비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4	4	4	4	4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관련	4	4	4	4	4
(1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수취 등의 개선(협약체결 전 대비)	8	8	8	8	8
판매수수료율	4	4	–	–	4
상품 직매입 거래 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액의 수준	–	–	4	4	–
직매입거래 비중의 증가 비율	2	2	–	–	4
거래조건 유지율	–	–	2	2	–
매장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한 임대료 조정, 납부 유예 및 관리비 면제 등 지원 실적	2	–	2	2	–
중소기업 제품판매 (정률)방송 실적의 증가 비율	–	2	–	–	–
(12)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등의 설정 및 운용	6	6	6	6	6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설정 · 공개	2	2	2	2	2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준수	2	2	2	2	2
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대한 충실한 반영	2	2	2	2	2

업종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편의점	마트, 전문점	온라인 플랫폼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30	30	30	30	30
(1)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지시스템 구축 · 운용	15	15	15	15	15
사전 서면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3	3	3	3	3
구두발주 등 방지 시스템 구축	3	3	3	3	3
경영정보 요구 목적 · 범위 · 절차 관련 기준 마련 및 준수	3	3	3	3	3
자체 점검 실시 실적	6	6	6	6	6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여부	15	15	15	15	15
종업원 파견 가이드라인 준수	5	–	–	4	–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준수	5	5	–	4	4
반품지침 준수	5	5	7.5	4	–
TV홈쇼핑 심사지침 준수	–	5	–	–	–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준수	–	–	7.5	3	4
인터넷쇼핑몰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	–	–	–	4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	–	–	–	3
3. 상생협력 지원	10	10	10	10	10
(1) 금융(자금)지원	10	10	10	10	10
전년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	8	8	8	8
간접지원	2	2	2	2	2
(2) 기타지원	+10	+8	+10	+10	+10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가격·판매수수료 조정실적	+2	+2	+2	+2	+2
중소기업(중소 납품업자) 상품판매 실적의 증가비율	+2	–	–	–	+2
총 매출액(소비자 판매액) 증가 비율	–	+2	–	–	–
총 거래금액(매입액) 증가 비율	–	–	+2	+2	–
파견받은 납품업자 등 종업원에 대한 이동 경비, 식비 등 인건비 부담	+2	–	+2	+2	–
광고비, 서버비 등 각종 비용 인하 또는 지원 실적	–	–	–	–	+2
기타 지원 실적	+4	+4	+4	+4	+4
(3) 추가 가점항목	+8.5	+8.5	+8.5	+8.5	+11.5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조치	△3(경고) ~ △25(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행위 추가 감점	△2(경고) ~ △5(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 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	△5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로 조치	△1(경고) ~ △5(고발)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10				

Ⅱ 분야별 평가점수 일람표

3 가맹분야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1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내용의 공정성 (10)	**(1) 영업지역 설정 · 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기준 설정**	1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 설정	0.2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0.4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	0.4
	(2) 광고 · 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
	광고 · 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기준 마련	0.5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0.5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0.5
	비용부담 기준 마련	0.5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금액의 조정 기준	1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0.3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	0.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1
	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	0.3
	내 · 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0.2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 · 운용에 대한 기술	0.3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	0.2
	(6) 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1
	계약해지에 관한 기준 설정	0.5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	0.5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	0.5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	0.5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1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	0.5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에 대해 규정	0.5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할 절차 기술	0.5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	0.5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2.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68)	**(1) 영업지역 설정, 상권 · 정보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이행**	**5**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이행	1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2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 허용	2
	(2) 광고 · 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8**
	광고 · 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2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2
	광고행사 50%, 판촉행사 70% 이상 동의 획득	4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5**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준수	2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3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0**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관한 기준 명확한 준수	2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3
	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2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의 비중	3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의 운영	**7**
	내 · 외부 감시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1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1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의 실질적인 운영	2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3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기준 준수	**8**
	계약해지에 관해 설정한 기준의 준수	2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이행	3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실적	3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0**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이행	5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인력지원 이행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타지원 이행	1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이행	**5**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감경 면제	1
	영업부진점포의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부담	1
	실제위약금 감면 실적	2
	위약금 등에 관해 설정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한 정보의 제공	2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3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다는 기준의 이행	**5**
	협의절차의 명확한 준수	3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가 명확한 준수	2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3.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22+10)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2)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협약 평가기간 만료일 기준)	5
	(3) 이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 협약 체결	2
	(4)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10
	매년 공정위가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고지한 내용의 반영 정도	+10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	△3(경고) ~ △25(고발)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0
	(3)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0

Ⅱ 분야별 평가점수 일람표

4 대리점분야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계약의 공정성 (68)	**(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17**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의 명확성	4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사유 명확화 및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의 마련	2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마련	4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2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준수	5
	(2)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17**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의 명확성	6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마련	4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2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준수	5
	(3)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14**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및 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의 마련	4
	계약해지와 관련한 대리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공개	2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준수	5
	(4)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	**20**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18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공개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	**(1) 법위반 사전예방 체계 구축**	**8**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 체계 구축	4
	주문내역 확인 체계 구축	4
	(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3**
	(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및 이행	**4**
	(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5**
상생협력 지원 (12)	**(1) 자금지원**	**4**
	(2)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4**
	(3) 기타지원	**4**
	(4) 기타 가점항목	**+5**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조치**	**△3(경고) ~ △25(고발)**
	(2)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경고) ~ △5(고발)**
	(3)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10**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

• 정책 안내서 •

마무리

공정거래협약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약이행평가 기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정거래협약제도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제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kofairnews

협약 포털 : http://gowith.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 gowith@kofair.or.kr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

• 정책 안내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